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2조, 제2조의2 조, 제2조의3,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별표 1~5, 서식 1호, 서식 3호~1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기술 인증 신청)”을 “(신기술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을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받”을 “지정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유효기간의”를 “지정 유효기간의”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신제품 인증 신청)”을 “(신제품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

법」”으로, “인증서”를 “지정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2조의6의 제목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로 한다.

제2조의7의 제목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유효기간의”를 “지정 유효기간의”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지정서 또는 확인서”로,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를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로,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을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을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을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을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

을”로, “인증표시판”을 “지정표시판”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증·유효기간”을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받”을 각각 “지정받”으로 한다.

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4호 중 “인증받”을 각각 “지정받”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u>신기술 인증 신청</u>)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u>신기술 인증</u>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신기술 인증 신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u>신기술 인증서</u> 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조(<u>신기술 지정 신청</u>) ① ----- <u>지정</u> 을 ----- ----- <u>지정 신청서</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지정서</u> ----- -----.
제2조의2(<u>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u>)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신기술 인증번호</u> 2. <u>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u> 3. <u>신기술 인증</u> 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u>신기술 인증</u> 의 유효기간	제2조의2(<u>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u>) ----- ----- ----- ----- ----- 1. ----- <u>지정번호</u> 2. <u>지정받</u> ----- 3. ----- <u>지정</u> ----- ----- ----- 4. ----- <u>지정</u> -----
제2조의3(<u>신기술 인증 유효기간</u>)	제2조의3(<u>신기술 지정 유효기간</u>)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생략)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연장 신청) ① -----
----- 지정 유효기간
의 -----
----- 지정
유효기간 연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

-- 지정을 -----
----- 지정 신청
서-----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지정서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기술 진흥법」---
----- 지정증서 -----

라. ~ 아. (생 략)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u>인증서</u>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6(<u>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u>) (생 략) 제2조의7(<u>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u>)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u>인증 유효기간</u>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u>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u>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u>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u>) 산업통상부장관은 <u>인증서 또는 확인서</u>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u>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u>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	라. ~ 아.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지정서</u>-----. 제2조의6(<u>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u>) (현행과 같음) 제2조의7(<u>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u>) ① ----- ----- <u>지정 유효기간</u>의 ----- ----- <u>지정 유효기간 연장</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u>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u>) ----- <u>지정서 또는 확인서</u>----- ----- <u>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u>의 ----- -----
---	---

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략)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

--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

1. 지정서 -----

--
2. (현행과 같음)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정신제품-----
-----.

③ -----
----- 지정을 -----

----- 지정표시판-----
-----.

제6조의2(<u>인증의 사후관리 방법</u> <u>및 절차 등</u>) ①·② (생략)	제6조의2(<u>지정의 사후관리 방법</u> <u>및 절차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 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u>인증·유효기간 연장</u> 및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u>지정·유효기간</u> ----- ----- ----- ----- ----- -----.